

국회는 강용석 의원을 제명하고, 법무부는 변호사자격을 박탈하라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입법·사법감시 20년의 법률전문NGO로서, 국회윤리특위가 5월 30일 강용석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의결한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8월 31일 **국회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의결 정족수와 비밀무기명투표를 방패삼아** 추호라도 사사로운 연고나 값싼 감싸기로 징계·척결하지 못하는 ‘더 큰 잘못’을 범하는 ‘부끄러운(국민의) 대표’가 없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강의원 제명의 결정적 단계(8.31.본회의)에서 불출석한(정족수미달로 제명못하게) **의원을 제18대 국회 4년 종합 및 4차년도(2011) 의정활동 평가사에 비중있게(원칙과 책임감 결여 등) 반영할 것을 천명한다.**

① 이미 사법부에서도(5월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이 실형을 선고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또한 후보시절 법률팀장)인 **강용석 의원이 토론대회 심사위원으로서, 여대생들에게 토론대회도, 아나운서도 실력이 아닌 미모와 성상납이 좌우한다 등의 사회질서와 윤리의식을 뿌리째 교란시키는 ‘퇴폐언어’를 수차구사한 사실로도,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해야 했음에도, 거짓말과 무고소송제기까지 한 것은, 국민의 대표(국회의원), 법률가(변호사)로서, 법과 양심(도덕)을 스스로 짓밟는 파렴치한 처세였으며, 사법(수사와 재판)까지 맘대로 왜곡·능멸·우롱할 수 있다는 오만한 행태로서, 이는 단순한 성희롱 발언이나 특정직업 모욕의 차원이 아닌,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짓밟고, 국정(國政)의 기반인 국법존중과 사회통합 윤리질서와 건전한 가치기준을 파괴하는 참으로 중차대한 사회문제다.**

② 또한,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활동은 국회법(제29조, 제40조의 2)위반은 아니지만(국회의원의 4대 책무에 충실하자면, 변호사 등의 겸직은 가능한 사임·휴업해야 한다고 본다) 설사 변호사로서 사건수임을 하더라도 공익과 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악덕소송’ ‘사회악’을 옹호하는 것 만큼은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그러나 강용석 의원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직분을 망각하고, 악덕소송 ‘사회악’을 수임하였고, 그나마 몇몇한 변호사활동이 아닌 위법부당한 ‘청탁’으로, 수사·재판의 사법기관까지 오염시켰다는 아래와 같은 ‘결정적인(검은거레)의혹’이 있는 바, 검찰·법무부는 엄중수사·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 아 래 —

즉, 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가 사건수임 직후, 돌변한 법원·검찰의 위법부당한 처분·사태들

1) 소위 ‘판결로 말한다’는 재판장이 (임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대방에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증금 반환과 명도소송 재판 심리 중에)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열쇠를 주라(명도해 주라)”고 매 기일(2회)마다 계속하여 종용·압박하여, 방청객의 빈축·의혹까지 받으며 불공정 재판·선고를 함. (수치스런 청탁의혹 재판임).

2) 또한, 형사고소사건을 6개월동안 조사하지 않고 지체하던 중 대기업(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출신인 담당 Y 검사 가 경찰에게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케 하고는 변호사 포함 3명의 피의자들을 조사도 않고 하룻 만에 ‘기재동’하여 ‘무혐의’ 처분하게 하였다는 의혹과 정황임. (수치스런 위법부당 수사임)

《 법원·검찰청 문앞에서 개업활동 중인 K 변호사를 ‘주소를 몰라서 피의자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6개월동안 ‘입건’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고소당한 사실 자체까지 ‘애당초 없던 것’처럼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등재도 하지 않음. 》

3)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고소인들이 공정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앞으로 제출한 증빙자료포함 ‘진정서’까지 폐기(차장검사 지시로 되찾았으나 곧다시 은닉함)하여 고소당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으므로써, 위법부당한 ‘사건처리’ 사실을 검찰 자체 감찰로도 발견할 수 없도록 (은폐한) 감찰비리를 야기함.

(우리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의정모니터단체연합의 주관단체로서, 국민의 대표최고기관인 국회(의원)의 권위와 위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강용석 제명안을 8월 31일 제302회 임시국회에서 단호히 반드시 신속처리하여 신뢰를 받은 국민의 국회(국회의원)로서 권위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제보·문의 02) 523 - 8760~7